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9. 27 선고 2023가단599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100분의 9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C 사이에 2022. 4. 29. 체결된 이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C에게 경기도 고양시청 2022. 4. 29. 접수 제0610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제2부동산, 제3부동산, 제4부동산, 제5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C 사이에 2022. 5.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22. 5. 26. 접수 제6932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제6부동산 및 제7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C 사이에 2022. 5.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22. 5. 26. 접수 제693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기재 제8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C 사이에 2022. 5.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219,502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19,5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12. 2.경 의료법인 D을 설립하였다. 의료법인 D은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다. 피고들은 C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22. 1. 3.경부터 2022. 1. 7.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일명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2022. 1. 1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게 C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여 2022. 9. 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C 등의 의료법 위반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서를 통보받았다. 다. C은 2022. 4. 2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100분의 9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2022. 4. 29.자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① 제1부동산, 제2부동산, 제3부동산, 제4부동산, 제5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에게 2022. 5. 26.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2022. 5. 26.자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22. 5. 26. 접수 제69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제6부동산, 제7부동산, 제8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22. 5. 26.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2022. 5. 26.자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22. 5. 26. 접수 제69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22. 11. 2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C에게 요양급여비용 총 10,042,600,110원(공단부담금 7,832,255,450원 + 본인부담금 2,210,344,660원)에 관하여 부담이득 환수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3. 2. 3. 위 환수처분에 관하여 9,259,374,570원(공단부담금 7,049,029,910원 + 본인부담금 2,210,344,660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C은 2023. 12. 29.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8,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C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2013. 12. 2.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사해행위 당시(2022. 4. 29. 및 2022. 5. 26.) 이미 C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채권이 성립될 기초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22. 1. 1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C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2022. 9. 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C 등의 의료법 위반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서를 통보받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2022. 11. 2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거하여 C에게 부당이득 환수처분 결정을 함으로써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된다.

이 사건 2022. 4. 29.자 이전계약 및 이 사건 2022. 5. 26.자 제1, 2증여계약 당시에 C은 채무초과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2022. 4. 29.자 이전계약 및 이 사건 2022. 5. 26.자 제1, 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2022. 4. 29.자 이전계약 및 이 사건 2022. 5. 26.자 제1, 2증여계약 이전에 존재하였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2022. 4. 29.자 이전계약 및 이 사건 2022. 5. 26.자 제1, 2증여계약 이전에 원고가 2022. 1. 3.경부터 2022. 1. 7.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사실, 그 결과 원고가 2022. 1. 1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게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사실, C이 2023. 12. 29.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한편, 현재 C이 의료법위반에 관한 형사 제1심에서 그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C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특히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판결에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이 된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자체 행정조사를 거쳐 의료법위반이 의심되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사실이나 검사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한 사실만으로는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되는 어떠한 법률관계가 발생되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요양급여 환수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2022. 4. 29.자 이전계약 및 이 사건 2022. 5. 26.자 제1, 2증여계약 이전에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C이 이 사건 2022. 4. 29.자 이전계약 및 이 사건 2022. 5. 26.자 제1, 2증여계약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

이 사건 2022. 4. 29.자 이전계약 및 이 사건 2022. 5. 26.자 제1, 2증여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의 내역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적극재산	가액(단위: 원)	비고
별지 자동차	[자동차 셀토스	13,366,780	2022. 4. 29.
별지 목록 제1부동산	[토지] 전남 보성군 F	12,262,200	2022. 5. 26.
별지 목록 제2부동산	[토지] 전남 보성군 G	7,171,500	
별지 목록 제3부동산	[토지] 전남 보성군 H	3,310,560	
별지 목록 제4부동산	[토지] 전남 보성군 I	25,974,360	
별지 목록 제5부동산	[건물] 전남 보성군 I	23,700,000	
별지 목록 제6부동산	[토지] 전남 보성군 J	21,340,800	
별지 목록 제7부동산 지분 2분의 1	[토지] 전남 보성군 K	7,805,740	
지분 8분의 1	[집합건물] 고양시 일산동구 L외 3필지 M 타운 제3층 N호	2,783,570	
지분 8분의 1	[집합건물] 고양시 일산동구 L외 3필지 M 타운 제3층 O호	3,355,800	
지분 8분의 1	[집합건물] 고양시 일산동구 L외 3필지 M 타운 제3층 P호	1,538,660	
별지 목록 제8부동산 지분 2분의 1	[토지] 전남 보성군 Q	232,497	2022. 5. 26.
	합계 (2022. 4. 29. 기준)	122,842,467	
	합계 (2022. 5. 26. 기준)	109,475,687	

갑 제16호증,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사단법인 R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5. 2. 9. S은행에서 48,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마이너스대출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위 마이너스대출계좌에서 실제로 출금함으로써 대출채무가 발생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C에게 위 마이너스대출계좌 개설 이외에 달리 금융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2022. 4. 29.자 이전계약 및 이 사건 2022. 5. 26.자 제1, 2증여계약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였거나 이 사건 2022. 4. 29.자 이전계약 및 이 사건 2022. 5. 26.자 제1, 2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초래 내지 심화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22. 11. 21.에 이루어진 위 요양급여 환수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이 사건 2022. 4. 29.자 이전계약 및 이 사건 2022. 5. 26.자 제1, 2증여계약 당시의 C의 소극재산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위 환수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의 소급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원

별지